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
정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9일, 박선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선원의원)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3·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치게 짧은 계급정년은 퇴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도 직결됨. 국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급 직원의 경우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큼, 계급정년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약 3~5년간을 별도로 연금 수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3·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o 계급정년 연장 시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 근무 여건 하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역량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o 계급정년 연장 여부는 상하위 계급 및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쟁점으로서, 구성원의 계급과 연령에 따라 인사 적체 등에 따른 일부의 사기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승진 시기 등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o 따라서 계급정년 연장 여부는 조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정보원 조직 내부의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정년 연장의 효과, 즉 인력운용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성권)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